

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6. 12. 21
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년 12월 2일 이천시장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12월 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9회 이천시의회(정기회)
 - 제1차(96. 12. 20) 산업위원회 상정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교통행정과장 김종화)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비율이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일원화 하기로 확정 되었고, 부설 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%를, 경자동차에 대하여도 주차요금 50%를 감면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
- 2)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시간,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규정과 부설주차장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때의 신고규정 및 일반이용에 제공을 중지 또는 폐지시 이에 관한 신고 규정을 신설함(안 제23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김태신)

-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일원화 하기로 확정된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과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 삽입하여 주차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